안동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2026년 11월 27일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규정 제419호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7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본문의 후단 중 “2일”을 “4일”로 한다.

부 칙(2026. 11. 27.)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 ⑥ (생 략) ⑦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축시간은 유급으로 한다. ⑧·⑨ (생 략) ⑩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⑪ (생 략)	제24조의2(임산부의 보호)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5항 및 제6항----------. ⑧·⑨ (현행과 같음) ⑩---------- ---------- 4일----------. ---------- ---------- ⑪ (현행과 같음)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 현행 규정의 인용 조항 정비를 통한 규정의 정확성 제고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저출생 대응 및 출산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 주요내용

❍ 제24조의2(임산부의 보호) 제7항 개정: 단축시간 관련 인용 조항 정비

❍ 제24조의2(임산부의 보호) 제10항 개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개정사항 반영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최초 2일 → 최초 4일